

## 경운대학교 취창업지원위원회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재학생들의 취창업지원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운대학교 취창업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취창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편성 계획에 관한 사항
2. 취창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3. 취창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취업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
5. 기타 취창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
**제3조(조직)**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위원장은 취업지원센터장이 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2. 위원은 취창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(센터)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3.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**제4조(임기)**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**제5조(운영부서)** 취창업지원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(센터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업지원센터
2. 창업교육센터
3. 창업보육센터
4. 인터내셔널센터
5. 커리어개발지원센터
6. 현장실습지원센터
7. 기타 취창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

**제6조(운영절차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,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

② 취창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부서(센터)는 프로그램 실시 후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
③ 위원회는 위 제5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운영부서(센터)의 취창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편성·계획·운영·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한다.

④ 위원회는 취창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한다.

**제7조(환류)** 위원회는 취창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각 운영부서(센터)에서 자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운영부서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를 통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, 그 결과를 비교과과정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
**제8조(위원회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취업지원센터에서 관장한다.

**제9조(보칙)**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